

자진납부고지서(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가입)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, ‘폐문부재(보관기간경과)’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6. 8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‘자진납부고지서’ 공시송달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위반사항	공시송달 내용
대국전기주식회사 (공사명: 인재개발원 본관 등 2개소 내부개량 전기공사)	2841-11 -*****	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120-6 203호	지**	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가입	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

4. 공고기간: 2026. 6. 8. ~ 2026. 6. 22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이재윤(전화 031-850-7626)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